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9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07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춘곤,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강산, 박 석,
박춘선,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원형,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 관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는 하천은 청계천이 유일함.
- 서울시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 일환으로 지난 30일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고려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입 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제11조제1항제8호 동물동반 출입행위 삭제
- 나. 안제11조제3항 이용행위 예외사항 규정
- 다. 안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 신설
- 라. 안제13조 금지행위의 단속에 대한 내용 신설
- 마. 안제14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하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이용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이 가능하다.

1.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
2.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청계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청계천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2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단속반은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설공단 직원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 전에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이 제12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의2(세부사항) 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근거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2조제1항제1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	70	100
제12조제1항제2호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0	300	500
제12조제1항제3호	맹견을 출입시키는 행위	1,000	2,000	3,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u>별표</u>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 <u>별표 1-</u>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행정지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u>이용행위</u>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p>	<p>제11조(행정지도)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이용행위</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이 가능하다.

1.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

2.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

제12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청계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출입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청계천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2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단속반은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설공단 직원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 전에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이 제12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의2(세부사항) 동물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행정지도)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반려동물 동반 관련 행정지도 사항(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 관련 예외사항(교통약자, 시설관리 목적)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